

장애인 보장구분야 활성화 방안

1. 보장구분야 활성화의 과제

최근 미국 클린턴대통령이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으며 미·러 정상회담과 집무하는 모습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제야) 장애인들의 고통을 알았으며 또한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주목할 사실은 클린턴대통령이 휠체어와 목발을 이용하여 그가 겪고 있는 일시적 장애를 이겨내고 있으며, 보장구 사용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이란 막중한 자리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는 중요한 것이다. 신체적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장구의 역할이다. 보장구 사용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양식과 질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50% 이상이 잠재적인 보장구 수요자이며 보장구 사용을 통해 그들의 삶이 훨씬 쉬워지고 생산성 있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미국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계층의 장애인



朴 允 緒

한국보훈병원 의지창장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를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장애인 보장구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 장애인 보장구분야 활성화의 핵심과제이다.

들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를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장애인 보장구분야 활성화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장애인의 41.6%가 보장구를 소지하고 있으며, 70% 정도가 매우 잘 사용하고 있고, 보장구를 갖고 있지 않으나 필요한 장애인은 11.1%라고 조사되었다.

위의 조사결과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보장구 보급에 관한 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장애인의 단지 11%만이 보장구 구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선진국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장구 현장에서 보면, 아직도 필요한 보장구를 갖고 있지 못한 장애인이 너무 많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사결과이다.

또다른 이슈는 보장구의 질에 관한 것이다. 보장구란 의학과 공학이 결합된 재활공학의 산물로서 보장구에 적용된 과학기술의 수준에 따라 보장구의 품질이 좌우된다. 첨단기술이 응용된 보장구와 3, 40년전의 과학기술이 적용된 보장구간에는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첨단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재래식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간의 재활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 보장구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 장애인 보장구분야 활성화의 두 번째 핵심이슈가 된다.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이란 국민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 대책을 1996년부터 적극 마련중에 있으며, 보장구와 관련하여 법체계의 정비, 연구개발, 업체지원 육성,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보험적용 등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2. 현장에서 본 보철구분야의 문제점

가. 정확한 통계자료의 부족

어느 국가건 완벽한 인구 통계조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조그만 국가인 덴마크의 통계를 갖고 장애인 통계를 유추해서 추정하였던 유학시절의 경험이 떠오른다.

1995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장애인이 105만명 있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인구의 10% 수준인 400만 장애인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 동조사에서 보장구분야에 대한 조사가 일부 행해졌지만, 앞의 지적처럼 조사통계자료만 보면 보장구분야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현실이 전혀 조사결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이 장애인 범주의 제한에서 유래되지만, 보장구 수요과약을 위해 별도로 정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게 어떠한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지를 묻고, 이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물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장구 전문가들이 보다 많이 참여해서 설문내용이 보다 충실한 조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과제는 보장구 공급측면의 통계자료 부족이다. 우리는 보장구 업체가 전국에 몇 개가 있으며, 어떠한 품목이 매년 얼마만큼 유통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의 비중은 어떠한지, 보장구 기술자의 수는 얼마이며, 그들의 기술수준은 어떠한지, 보장구의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등 공급과 유통구조상의 어떠한 통계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

이처럼 보장구 수요자인 장애인에 대한 장애유형별 정확한 인원통계와 수요충족을 위한 보장구 공급체계에 대한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우리는 구체성이 없는 정책밖에 수립할 수 없게 된다.

나. 보장구 유통체계상의 문제점

보장구는 의학적으로 해결 못하여 남게 된 신체장애를 공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에게 공급되기까지의 유통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보장구는 의학적·공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제조기술자는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보장구를 장애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보장구만이 의사의 처방과 검수과정을 거칠 뿐 대

보장구 수요자인 장애인에 대한 장애유형별 정확한 인원통계와 수요충족을 위한 보장구 공급체계에 대한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우리는 구체성이 없는 정책밖에 수립할 수 없게 된다.

보장구 유통과정상의 문제점으로는 의사 확인없이 보장구가 공급되고 있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포괄적인 품목고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수입보장구들이 국내시장을 거의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분이 의사 확인없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의사 확인이 없다고 걱정한 보장구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의사의 확인과정을 거침으로 잘못된 보장구사용을 통해 신체장애가 더욱 악화되는 부작용을 시정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유통과정상의 문제는 보장구 적용법률이 장애인복지법과 약사법 2가지가 있으나 두법 어디에도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포괄적인 품목고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장구가 많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의료기구, 건강보조기구, 미용용구, 실버용품 등의 이름으로 많은 보장구가 아무런 법적 제재없이 마구 유통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유통업체들의 광고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여성을 비롯한 정상인들에게 널리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간혹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로 10대 여학생들의 휘어진 다리를 2~3개월만에 완전히 교정시켜 준다는 다리교정기가 있고, 장기간 착용하면 오히려 척추에 부담을 주는 코르셋이 비만한 여성들의 미용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등 보장구를 오도하는 광고가 아무런 제재없이 허용되고 있다.

세 번째 유통과정상의 문제는 수입보장구들이 국내시장을 거의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생산이 안되는 품질이 우수한 고가의 보장구는 물론이고 지팡이, 목발 등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도 중국, 대만 등의 값싼 저질 보장구가 수입 판매되고 있다. 과장되게 얘기하면, 국산 보장구는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부족으로 존립기반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는 처지이다.

다. 보장구 연구개발의 문제점

보장구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의 연구개발사업이 우선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주요 연구사업을 보면, 1989년 과학기술처 주관의 소외계층을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차원에서 보장구 연구비로 약 10억이 지원된 바 있고,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의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비로 보장구개발에 매년 3~5억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G-7 과제에 역시 보장구 개

발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정부재정에서 지출되는 연구비의 상당수가 첨단지향의 보장구 개발에 치중하고 있고, 그 연구결과가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 연구 따로 생산 따로의 논리로서 보고서 제출로 연구를 끝내고, 생산은 기업의 투자회피로 안되고 있다는 식으로 종결되는 것이 우리의 연구개발 풍토이다.

근본적으로 첨단지향적, 이론지향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는 기존 보장구의 개량, 개선을 요구하는 장애인이나 보장구 현장의 바램과는 괴리되어 있는 것이다. 첨단 보장구 연구보다는 기존 보장구의 개량연구가 보다 절실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연구방향인 것이다. 일례로 대표적인 보장구인 휠체어의 경우, 국산품의 품질이 수입품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장애인들이 외국산을 선호하고 있는데 1~2억의 개발비만 지원이 되면 선진국 수준의 휠체어 생산이 국내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연구비 지원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시각변경이 요구된다.

연구개발의 두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란 차원에서 스즈키자동차회사가 전통휠체어를, 그리고 세이코시계가 맹인용 시계를 각각 개발하여 일본장애인에게 보급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특징을 살려 유관된 보장구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맹인용 컴퓨터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전체기업을 상대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연구개발의 세 번째 문제는 세계적으로 미개발된 보장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보장구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미개발된 품목이 많이 있다. 외국의 보장구 전문가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개발된 보장구를 똑같이 개발하지 말고 신규로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에서는 새로운 품목의 보장구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보장구가 하나 더 탄생하게 되고 아울러 개발업체는 채산성을 맞출 수 있어 보급에 활기를 떨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보장구를 수출산업으로 육성

보장구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의 활발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대기업의
연구개발 참여의
유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미개발된
보장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행 보장구 관련 장애인복지법과 약사법의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법조항의 개정과 함께 보장구의 법적 해석 및 유통과정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보장구 품목에 대한 별도의 고시가 있어야 한다.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용화에 초점을 둔 보장구를 개발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3. 보장구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가. 법적·제도적 정비

현행 보장구 관련 장애인복지법과 약사법의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법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의수족·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그리고 휠체어·보청기는 약사법의 적용을 각각 받고 있는데, 보장구분야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으로 일원화시키고 보장구 관련사항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 먼저 보장구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보장구란 장애인들의 신체장애의 보완 및 예방 그리고 신체기능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물품, 기구, 장비를 말한다”라는 보장구 정의가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로 보장구의 법적 해석 및 유통과정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보장구 품목에 대한 고시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점필 및 점판, 흰지팡이 등의 7가지 품목은 너무 좁게 보장구를 해석한 것으로, 일본에서 인정되는 18개 보장구 품목은 최소한 전부 반영되고 나아가 37종의 생활용구까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나. 보장구 무상지급제도의 확충

보장구는 장애인들의 신체활동력, 기동력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직업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데 매우 유용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신체에 적합한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한 경제활동 가능연령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위해,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며 이것이 1만불시대의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상당수의 장애인이 자기 돈으로 보장구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며, 약 절반정도의 장애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1981년부터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

구 교부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부터 보장구가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되어 199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에 있어 보장구 보급이 앞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영세장애인과 의료보험비대상 장애인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해 보장구를 지급받는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적부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일본의 경우처럼 이들 장애인가구의 소득에 따라 일정률의 본인 부담액을 부과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함으로 전체 장애인이 경제적 이유로 보장구 사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장구제조에 대한 국가표준규격과 기사자격제도가 조속히 실시되어 어느 곳에서 보장구를 맞추든지 품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보장구 표준화 및 기사자격제도 실시

우리나라에는 보장구제조에 대한 표준규격과 기사자격제도가 없다. 이런 사유로 선진국 수준의 우수보장구 제조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 신체기능 보완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불량보장구가 한편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가표준규격과 기사자격제도가 조속히 실시되어 어느 곳에서 보장구를 맞추든지 품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조기나 의족제작시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국가의 공통된 규격을 제정하고, 이들을 만드는 기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로 국한시켜야 한다. 이·미용사들도 자격증이 필요한데, 신체일부를 만드는 보장구 기사자격제도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우리 현실이다. 보장구의 하나인 안경사제도가 1989년부터 국가시험을 통해 실시되고 있듯이, 전세계적으로 자격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국내교육이 가능한 의수족, 보조기 분야와 보청기 분야에 대한 기사자격제도를 우리도 시급히 실시하여야 한다.

4. 맺음말

장애인 누구에게나 보장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경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보장구없이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

정부는 보장구 분야에 대한 무정책,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을 보호하고 보장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하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증의 지체장애인과 시각, 청각장애 인들에게는 보장구가 필수적이다.

이들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정책은 어 떠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하다. 경제적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에서 인정한 우수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이 국가의 책임이다.

우리나라 보장구는 지금까지 국가정책이 거의 없이 민간주도로 발전되어 왔다.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보장구 분야에 대한 무정책,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을 보호하고 보장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개입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포럼』 3월호

이 달의 초점 : 보건의료의 선진화

보건의료 선진화의 과제 • 오대규
중소병원 발전구상(Ⅰ) -병원 전문화를 중심으로- • 정우진
의료의 효율화를 위한 1차의료의 발전방안 • 김혜련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안 • 변종화
의료시장 개방화와 대응방안 • 노인철

정책분석

의료보험조합의 『건강보험』 보험자로서의 역할 정립방안 • 최병호
서울특별시 생활보호사업 실태와 개선방안 • 박찬용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용 부담방안 • 한혜경
냉장·냉동식품류의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 정기혜